

## 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### ◇ 행정규칙명

- 디자인 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

### ◇ 제·개정 이유

- 법제처 사후심사에 따라 고시 제5조제2항제1호의 개선의견을 수용하여 일부개정을 진행
- 공지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법인등기부등본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삭제

### ◇ 주요내용

- 가.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규정을 삭제하고 제2항 후단에 전자정부법에 의한 확인 규정을 신설